##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7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 : 윤종오·조 국·정혜경

전종덕 • 박은정 • 차규근

신장식 · 황운하 · 용혜인

고민정 · 김재원 · 정춘생

민형배 · 김성환 · 서미화

김종민 · 김영호 · 김우영

안태준 · 김영배 · 한창민

김용민 의원(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드러남. 이 300억원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돈으로, 노 전대통령이 추징당한 2,628억원과도 별개임. 또 다른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자금의 축적과 은닉 경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조사가 필요함.

하지만 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불법 비자금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몰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 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므로 공소 제기를 전제로 함. 이에 따라 범인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음.

이와 같은 현재의 몰수 제도는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본 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 관념도 어 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범인이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고, 몰수 대상을 "물건, 금전, 범죄수익" 등으로 확대해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제9호, 제48조 및 제49조).

법률 제 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건"을 "물건, 금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물건"을 각각 "물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물건"을 "물건 등"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몰수 등의 특례) 제48조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은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1條(刑의 種類) 刑의 種類는	第41條(刑의 種類)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沒收	<u>&lt;삭 제&gt;</u>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			
음 각 호의 <u>물건</u> 은 전부 또는	<u>물건, 금전,</u> 범죄행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		
	산(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		
	<b>.</b>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	1		
공하려고 한 <u>물건</u>	<u>물건 등</u>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2		
취득한 <u>물건</u>	<u>물건 등</u>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3		
취득한 <u>물건</u>	<u>물건 등</u>		
② 제1항 각 호의 <u>물건</u> 을 몰수	② <u>물건 등</u>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			
額)을 추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第49條(沒收의 附加性) 沒收는 他	제49조(몰수 등의 특례) 제48조에		

刑에 附加하여 科한다. 但, 行爲者에게 有罪의 裁判을 아니할 때에도 沒收의 要件이 있는때에는 沒收만을 宣告할 수 있다.

따른 몰수 및 추징은 행위자에 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 거나 행위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다.